

## 대전광역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5
----------	-----

발의년월일 : 1996년 12월 20일  
발의자 : 김광희의원외 11인

### 1. 제안이유

-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등을 통하여 환경폐기물로부터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 나아가 재활용제품 생산을 통한 제품의 우선구매 및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적용범위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한 업종 및 제품과 재활용 산업을 대상으로 함 (안 제2조)
- 나. 재활용 제품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는 건설폐재 배출시 일정규모의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토록 함 (안 제3조)
- 다. 재활용 제품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종합재활용센타에서 생산한 제품을 타 제품에 우선하여 구매 사용토록 함 (안 제5조)

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센타에 위탁 처리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에는 재활용제품 판매가격을 감면토록 함 (안 제6조)

### 3. 참고사항 (관련법규)

- 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1항
- 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 다. 환경부 및 건설부고시 제1994-1호

##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 제12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처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별 규격에 따른 재활용 방법
  2. 지정부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
  3. 지정부산물의 분해·파쇄등에 관한 사항

## 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자원재활용업종)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제3조(제1종지정제품)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정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가전제품(텔레비전·냉장고 및 세탁기에 한한다)
- 제4조(제2종지정제품)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캔
  2. 합성수지용기
- 제5조(지정부산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3. 토사(토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 제6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 다. 환경부 및 건설부고시 제1994-1호

- 제8조(건설폐재의 재활용율 향상) 중점관리대상 건설업자는 별표3의 건설폐재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건설폐재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별표3】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 (제8조관련)**

(단위 : %)

연 도 별	목 표 율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30	25	10
1996년 1월 1일까지	45	35	20
1997년 12월 31일까지			
1998년 1월 1일까지	60	50	35

## 대전광역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시설의 육성과 재활용품의 구매 및 재활용 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내지 제6조에 규정한 업종 및 제품과 재활용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재활용율의 향상) ①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건설폐재 배출시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토사 : 45퍼센트
2. 콘크리트덩이 : 35퍼센트
3. 아스팔트덩이 : 25퍼센트

②다음 각호의 지도·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허가
2. 재개발 및 재건축 허가
3. 폐기물 다량 배출신고

제4조(재활용제품의 용도별 품질기준) 재활용 제품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사용의 촉진) ① 시장·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중 대전광역시 종합재활용센타(이하 “재활용센타”라 한다.)에서 생산한 제품이 사용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타제품에 우선하여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로서 지정부산물을 재활용센타에 위탁 처리하는 자는 당해센타에서 지정 부산물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타 제품에 우선하여 구매 사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제품 판매가격의 감면) 건설폐기물을 연간 3,000톤이상 반입하는 자가 재활용센타에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재활용 센타에서 생산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재활용제품 판매가격 감면 (제6조 관련)**

구 분	감 면 범 위	비 고
반입폐기물량의 50%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경우	재활용제품 가격의 50% 감면	
반입폐기물량의 40%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경우	재활용제품 가격의 40% 감면	
반입폐기물량의 30%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경우	재활용제품 가격의 30% 감면	
반입폐기물량의 20%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경우	재활용제품 가격의 20% 감면	
반입폐기물량의 10%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경우	재활용제품 가격의 10% 감면	